



보도자료

2020. 12. 28.(월) 배포

힘내라 대한민국

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

- ◆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강화 등 국민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「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」
- ◆ 사회서비스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「사회서비스 혁신방안」 및 「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」 논의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2월 28일(월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.

「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(2021~2025)」

□ 이번 「제4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」은 △기후변화, 위해 외래 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, △야생동물 질병·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·유통·전시·판매 등 야생동물 전(全)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.

○ 이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야생생물법」)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,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의 종합적인 보호와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.

※ 전문가, 관계기관,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포럼(3회)·분과포럼(6회)을 통해 현장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

□ 먼저 국내 생태계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, 멸종위기종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.

-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*, 관계부처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** 등 한반도 생태축 보전·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.

* 2020년 2개 도시(밀양, 곡성) → 2025년 25개 도시(누적)

** 환경부·국토교통부·산림청 합동, 2020년 46개소 복원→2025년까지 81개소 복원(누적)

- 기후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점검(모니터링) 항목을 확대*하고, 매미나방과 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.

* 기후변화 점검 항목 확대 : 2020년 17개 항목 → 2025년 20개 항목

- 아울러, 미국가재,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을 평가하여 국내 유입·유통을 관리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확대하고(2020년 300종 → 2025년 1,000종), 외래생물이 유입되는 통로인 항만·공항을 중심*으로 예찰·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.

* 붉은불개미(생태계교란 생물)는 부산항(2017년 9월)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당진항(2018년 6월), 인천항(2018년 7월)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관계부처 합동 방제 추진

-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,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유입·유통·판매·보관(소유) 등에 대한 전(全) 과정 관리체계*를 구축한다.

* 「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」(2020년 6월 3일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) 후속

- 국내 수입·반입·유통·판매·보관을 제한하는 야생동물(포유류·조류·파충류·양서류) 목록을 마련하고,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및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의 전시 금지 등을 추진한다.

- 특히, 야생동물을 수입·생산 또는 구매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, 관리기준 마련,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.

※ 국내에 유입되는 야생동물(67만 마리) 중 멸종위기종과 같은 유통 관리

대상은 5.3만 마리(8%) 수준(2018년 기준, 포유류·조류·파충류·양서류)

- 또한,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질병을 지정*하고 사전 예찰·진단기법 마련·검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.

* (현재) 2종 위주 질병감시(조류인플루엔자·아프리카돼지열병) → (2023년) 11종 → (2025년) 40종

- 이를 위해 「야생생물법」* 및 「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」** 개정을 추진하고, 효율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‘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’도 구축할 계획이다.

* 야생동물 수입 신고제도 도입, 질병 검역 등 유입 관리 강화,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등 관련

** 동물원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

-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권역별 생물자원관,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,

- 동물을 이용한 축제, 체험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야생생물과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.

「사회서비스 혁신방안」

-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,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,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이용권(바우처) 제도* 도입 등을 통해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왔다.

* 9대 이용권(바우처) 사업 : 지역사회서비스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, 가사·간병 방문지원, 장애인활동지원, 발달재활, 언어발달, 발달장애인 부모상담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,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지원

※ 이용권 지원 실적 : 제공기관 1만 3천 개, 제공인력 19만 명, 이용자 66만 명(2019년 기준)

- 그러나, 저출산·고령화, 1인 가구 증가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빠른 인구·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였고, 코로나19 이후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.

- 이에 정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'사회서비스 혁신 전담팀(TF)'을 구성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찾고, 관련 토론회(포럼)*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'사회서비스 혁신방안'을 마련하였다.

* <사회서비스 혁신포럼> : 1차(10월 29일), 2차(11월 6일), 3차(11월 13일)

□ 첫째,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돌봄, 긴급돌봄 및 심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.

-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긴급돌봄 체계를 강화하고, 코로나 우울에 대비하여 경제적 취약계층, 노인, 다문화가정 등 대상별 심리지원을 확대한다.
- 또한, 시설 중심의 기존 돌봄 체계가 가진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*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홈** 등 재가서비스를 확충·고도화한다.

*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는 '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' 추진(2019년 ~)

**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·노인가구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(AI)스피커,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(LGU+·SKT 사회공헌, 2019년 7월~2021년 6월)

□ 둘째,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품질관리 총괄·전담기구(컨트롤타워)로 하여 서비스 제공기관·인력에 대한 통합적 질 관리를 실시한다.

-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문인력을 통한 연구, 상담·자문 등을 실시하는 한편, 지자체가 서비스 질 관리 책임자로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용자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체계도 개편해 나간다.
- 아울러,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정비(~2021년) 및 인건비, 고용안정성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마지막으로,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,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*을 설립하고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한다.

- * 「지방출자출연법」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, 긴급돌봄, 민간제공기관 지원, 재가서비스 제공, 국공립시설 수탁·운영 등 기능 수행 (현재 11개 지역(서울·대구·경기·경남·인천·광주·대전·세종·강원·충남·전남) 설치)
- 또한, 기술 발전 및 감염병 대응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**비대면·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,**
-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, 근무기간, 임금수준, 종사자 만족도 등 **양과 질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**를 개발하여 평가체계 및 관리 도구를 마련할 계획이다.
- ※ 시범적용 후 지표 보완을 거쳐, 범부처 확대 가능한 평가체계 마련(2022년)
- **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합·연계하여**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**수요자 친화적인** 방식으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

「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」

- 정부는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,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요구되는 공동체의 사회적가치 추구 활동을 지원하고자, 이번 방안을 통해 **사회적경제조직을 새로운 서비스 공급주체로 활성화하는** 방안을 제시하였다.

※ ‘**사회적경제**’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하며, ‘**사회적경제조직**’에는 사회적기업, 소셜벤처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이 포함됨

- 우선, **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** 위해, 도시 지역은 돌봄조합 등 **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**하고, 농촌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읍·면단위 **돌봄협의체와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**하고

농협의 역할을 확대한다.

- 또한, 사회적경제조직의 **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참여 및 사회 서비스원과의 협업 체계 구축** 등 기존 정책과도 연계하는 한편,
- 시설 투자·법인 설립 등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한 **자활기업 규모화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** 시범사업을 추진한다.
-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이 **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**을 원할 경우 교육·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, 사회적경제기업의 **사회서비스 분야 진출**을 돕는다.
- 아울러, 사회적경제조직 간 **연계·협력**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**통합** 제공하는 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.
- 또한, 사회적경제조직이 **지역보장협의체**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, 조직 내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책기반을 구축한다.
-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6개 분야에서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.
- 첫째,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 연합(컨소시엄)* 등을 활용하여 조직·서비스를 연계하고, 이를 바탕으로 주거·복지·건강·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.
- *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·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·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(10개 지자체 참여 중)
- 둘째,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는 **농협 - 지자체 협력**을 통해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·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.

※ 방문요양을 기존 14개에서 50개 농협으로 확대하고, 이를 기초로 주간보호 시설 및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 계획

- 셋째, **건강·의료서비스 분야**에서는 규제 정비를 통해 **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**를 적극 유도하고,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.
 - 넷째, **가사지원 서비스 분야**는 연구를 통해 **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개발**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업 모델을 확산시킨다.
 - 다섯째, **아동 돌봄 분야**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 되도록 **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**하고, 어린이집·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제공기관이 **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**하도록 지원*한다.
- * (예시)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·어린이집 대상 교육·상담 실시, 지역사회(사회적기업) 연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·확산, 주민 주도 돌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틈새돌봄 실시 및 역량강화 지원
- 마지막으로, **장애인 돌봄 분야**에서도 **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**와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유도, 사회적협동조합의 **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진입**을 통해 **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**할 계획이다.

※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(12.28.)

[붙임] 「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」 비전 및 추진전략



비전

야생생물과 국민이 공존하는 건강한 한반도

목표

야생생물 위협요인을 저감하는 보호·관리 체계 정착

- 보호지역 확대 : '20년 16.8% → '25년 20%
- 상시 예찰 야생동물 질병 확대 : '20년 2개 → '25년 25개
-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 : '20년 300종 → '25년 1,000종

추진 전략

①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

- 야생생물종 조사·활용체계 선진화
-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보전 체계화
-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·관리 강화
-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 강화

②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

-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및 복원체계 마련
-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 보전·복원 확대
- 기후변화 대응 야생생물 보호
- LMO 안전관리 강화

③ 공존기반 선진화

-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기반 마련
- 외래생물 관리기반 확충
- 야생동물 사고 예방과 구조·치료 체계 강화
- 유해동물 관리기반 확충
- 밀렵, 밀거래, 수렵제도 정비

④ 보호·관리 기반 강화

- 야생생물 보호·관리 체계 및 제도 정비
- 야생생물 보호 교육·홍보 강화
- 야생생물 보호 대내·외 협력 강화